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대상 공사**입니다.
- ◎ 다만, **사실조사(사전단속)**는 **발주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조사합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

-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관내 국도5호선 군위군 등 2개시군 일상유지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위 치 : 대구(군위), 경북(의성) 일원
 라. 사업개요 : 금속구조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대공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40일
 바. 공사예정금액 : 금605,000,000원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대
금472,727,273원	금47,272,727원	85,000,000

사. 기초금액 : 금520,000,000원

-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금회 예산액은 100,000,000원, 공사기간은 90일 이며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전문업부분야는 토목공사업입니다.
- ※ 본 공사는 ‘공사현장의 다양한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2),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자.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1. ~ 2026. 9. 29. 10:00	2026. 9. 29. 11:05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서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 3 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카.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파.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을 따릅니다.

거.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하)수급인은 피공제자에게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pm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최근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로 평가하므로, 우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3)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시행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실조사는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 본 공사의 개찰 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건설업의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같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 ⑤ 기술자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급여이체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⑥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 ⑦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및 결산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⑧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⑨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 ⑩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등 (별첨 서식)

※ 위 준비자료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 위 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추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대구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는 등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_____

○ 주 소 : _____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
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
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
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
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성명)

(인)